

고덕국제신도시 A-17블록 제일풍경채 센트럴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17BL
- 공급규모 : 지하1층, 지상24~34층 11개동, 총 1,022세대
- 배정내역

주택형	타입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m ²)			배정호수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84.9800A	84A	301	84.9800	25.5713	110.5513	30	
84.8600B	84B	219	84.8600	25.7468	110.6068	21	
84.9500C	84C	138	84.9500	24.9252	109.8752	13	
99.4200A	99A	364	99.4200	28.8663	128.2863	-	
소계		1,022				64	

※ 상기 타입은 표기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청약시 주택형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m²)×0.3025 또는 형별면적(m²)÷3.3058]

■ 유형별 배정세대내역

(단위:세대)

구분	대상세대수	84A	84B	84C	99A	비고
이주대책자	11	5	4	2	-	
장애인	16	7	5	4	-	
국가유공자	13	6	4	3	-	
중소기업근로자	12	6	4	2	-	
군인	12	6	4	2	-	
소계	64	30	21	13	-	

■ 특별공급 일정계획

구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7. 03. 30(목)	일간신문 및 고덕국제계획지구 A17블록 제일풍경채 센트럴 홈페이지(http://goduk-jeil.co.kr)
• 견본주택 개관	2017. 03. 31(금)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25-5 일원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 특별공급 접수일자	2017. 04. 04(화)	견본주택 방문접수(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2017. 04. 04(화)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 동호수발표	2017. 04. 13(목)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당사 견본주택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3.30.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 정금액이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주택의 전용면적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단, 철거민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건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번(무주택세대원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III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03. 30 예정)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 신청일에 신청장소(건본주택)에 비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인감도장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건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인감증명서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신청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7.04.04(화)예정]에 분양사무실(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25-5 일원, 제일풍경채 건본주택)에서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대상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 미계약 동 .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7. 03. 30(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 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사이버 건본주택 (<http://goduk-jeil.co.kr>)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 03. 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